

#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김돌순 연구위원 (Tel: 02-3156-7165 / e-mail: kimdully@kwdimail.re.kr)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여성가족부가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운영현황과 특성분석을 분석하고, 실효성 제고 방안을 연구함. 그 동안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와 정책개선에 참여한 정책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참여경험과 애로사항, 향후 제도 실효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파악함.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사례 3개를 대상으로 대상과제 선정에서부터 정책개선 이행과정 및 개선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함. ”

### 1. 배경 및 문제점

- 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추진함. 시행중인 법령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정책개선안은 해당 행정기관에 개선권고 함으로써 정책개선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
- ②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파악과 정책개선 이행과정 파악 필요. 이를 통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발전방안은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 있음.
- ③ 이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된 2012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부터 현재까지 운영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 조사 및 분석결과

### 가.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 운영체계와 추진과제 특성

#### 📍 운영체계

-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근거 및 시행절차와 방법, 정책개선권고 근거 등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관련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음.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가족부의 대상정책 선정, 연구위탁기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 여성가족부의 정책개선권고 통보, 관련부처의 정책개선 시행 및 개선실적 보고 등의 절차로 추진됨.

[그림 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체계



자료: 여성가족부(2016a).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p.100; 여성가족부(2016b).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47 참고로 재작성

#### 📍 추진과제 특성 (2012~2015년)

- ▶ 여성가족부가 2012~2015년 동안 추진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과제 수는 총 27개임. 연구과제 수는 최근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 연구과제별 예산을 점차 축소되고 있음. 이것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전체 예산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과제 수는 계속 증가하여, 한 과제당 투입 예산이 줄어드는 것임.

〈표 1〉 연도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과제 특성

구분	계	2012	2013	2014	2015
과제 수(개)	27	4	6	8	9
총 연구예산(원)	1,220,671,800	165,800,000	329,272,710	365,790,000	359,809,090
연구과제별 평균 예산(원)	45,210,066	41,450,000	54,878,785	45,723,750	39,978,788

자료: 1) 김경희 외(2015). 2015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및 검토, pp.103-104를 참조하여 작성.  
 서울: 여성가족부.  
 2) 프리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http://www.prism.go.kr/homepage/main/retrieveMain.do>에서 2016.5.23. 인출한 27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각 과제별 정보를 참조하여 작성.

▶ 연구기간은 과제별 평균 5개월 이내였음.

## 나.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 추진단계별 운영현황과 정책개선 사례분석

### 📍 사례분석 개요

- ▶ 사례분석 대상은 2015년 추진된 '방송심의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학부모 학교 참여활동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2014년 추진된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임.
-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과정 및 정책개선과정 참여자, 정책개선과제 소관기관 공무원과 관계자, 정책수혜자(시민) 등 34명을 면접조사 실시(2016.3~2016.10)

### 📍 사례분석 결과

〈표 2〉 사례 분석 결과

추진단계	분석 결과
(여성가족부) 대상정책 발굴 및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공모, 관계기관 수요조사, 전문가 제안, 여성가족부 내부 의견 제안 등 여러 경로 활용</li> <li>■ 대상사례는 전문가 제안, 여성가족부 내부 의견 제안으로 선정</li> <li>■ 정책소관 기관의 요구 파악에 근거한 대상정책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li> </ul>
(연구위탁기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방식으로 대상정책 소관기관이 연구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경우, 차후 정책 개선과제 소관기관에서 여성가족부의 정책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정책개선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li> </ul>
(여성가족부) 결과통보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진이 제안한 정책개선요건을 여성가족부 내부 검토, 정책개선 소관기관과의 협의 및 개선가능성 타진 과정을 거쳐 최종 정책개선과제를 소관기관에 통보함</li> <li>■ 정책개선과제 통보 유형은 두 가지: 기본적인 사항 또는 장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정책참고요청' 과제로 통보, 시의성 및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정책개선이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 11조에 따라 '정책개선권고' 통보함</li> </ul>
(정책소관기관) 정책개선 대책 수립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관부처가 '정책개선과제'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조건 또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1조)에 근거한 '정책개선권고' 통보가 실제 효력을 발휘</li> <li>-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이거나, 소관기관의 자체 역량으로는 마련하기 어려운 정책개선안</li> <li>- 업무추진부서 내부적인 공감대 형성이나 양성평등한 정책 실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은 경우</li> <li>- 부서 내 주요의사결정자의 개선권고 수용의지</li> </ul> </li> </ul>
(여성가족부) 정책개선 이행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개선 이행실적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는 주체는 소관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담당자. 그러나 정책개선권고가 업무담당자에게만 전달되고 기관담당자에게는 전달되지 않고 있음. 기관담당자에게도 전달할 필요가 있음</li> </ul>

## 다.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 참여경험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 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 연구자 면접조사 결과분석

#### 📍 조사개요

- ▶ 2012년 이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1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실시.  
2016. 3.하순 ~ 5.초순

#### 📍 조사결과

-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 평등한 정책 마련을 위해 매우 유용한 제도이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음.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존재의의는 포괄적·미래지향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성 평등한 정책개선과제의 도출에 있다고 보고 있음.
- ▶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과제 관리방식에 대해 개선 필요 사항 지적. 예를 들면 현재처럼 연구추진 당해연도에 대상과제를 발굴·선정하는 것은 업무담당 기관과의 사전협의할 시간이 부족하여 문제가 있으므로 최소한 6개월 전에는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연구자는 조사 분석 내용을 토대로 정책개선에 필요한 과제를 최대한 폭넓게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냄.
- ▶ 연구과정에서 애로사항을 보면 과업요구에 비해 연구예산은 적고 연구기간은 너무 짧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음.
-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 중장기적 안목에서 대상정책 발굴을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대상정책 선정은 최소한 6개월 전에 확정, 연구자 구성 기준 제시 및 관리 필요, 연구과제 관리방식 개선, 연구과제 수행 매뉴얼 개발, 지방자치단체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주제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공무원 및 연구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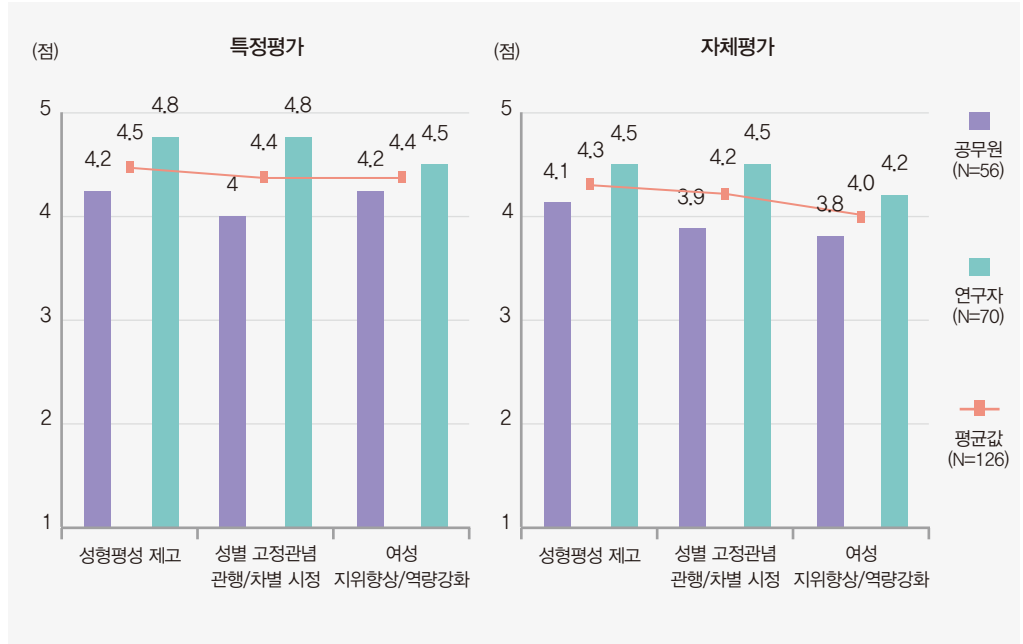
#### 📍 조사개요

- ▶ 2012년~2015년 동안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담당 공무원과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응답자는 총 126명으로 공무원 56명, 연구자 70명

#### 📍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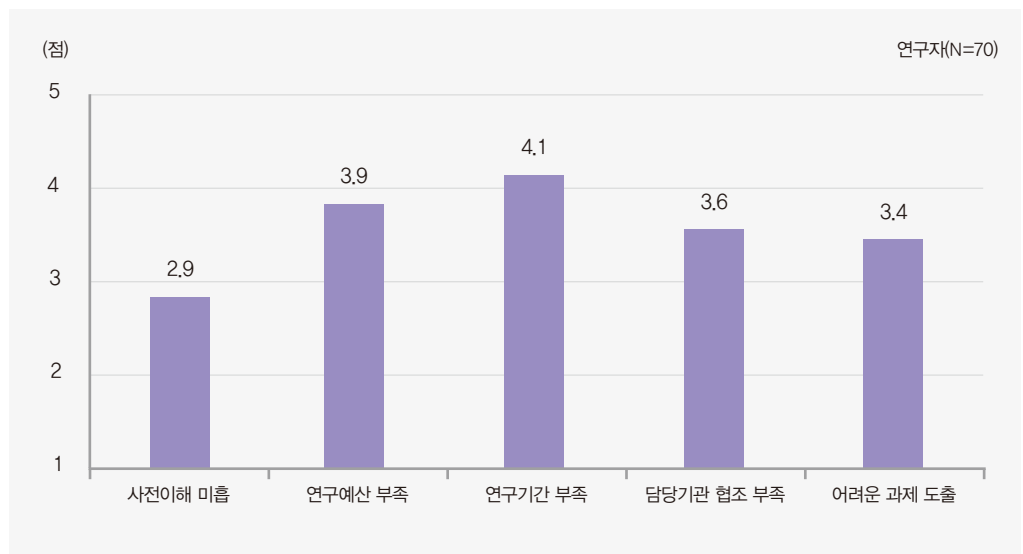
- ▶ 응답자의 제도 이해 정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무원이나 연구자 모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정부의 정책이나 법령을 성 평등하게 개선하는데 유용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또한 공무원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안)은 자체평가에 비해서 '공공정책의 성 형평성 제고', '성별 고정관념 관행과 차별을 시정하여 정책의 성 평등성 향상', '여성의 지위향상과 역량강화'를 더 중요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응답함.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와 자체평가 목적으로서 모두 의미가 있지만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으로서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그림 2] 성별영향분석평가 유형별 목적 인식



- 세부목표는 조사결과 다음의 여섯 가지 항목 모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와 자체평가의 세부 목표로서 중요성을 가진다고 응답함. 여섯 가지는 ‘공무원의 성평등 인식 향상’, ‘성별요구도 조사 파악’, ‘성별분리통계 자료의 생산과 활용 확대’, ‘정책의사결정자가 수용할 수 있는 성인지적 정책개선 과제 도출’, ‘관련 정책이나 법령에 관한 새로운 젠더 이슈 발굴’, ‘분석대상 정책 분야에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 인지적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 임.
- ▶ 연구자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애로사항을 보면 ‘연구기간 부족’, ‘연구예산 부족’, ‘담당기관 협조 부족’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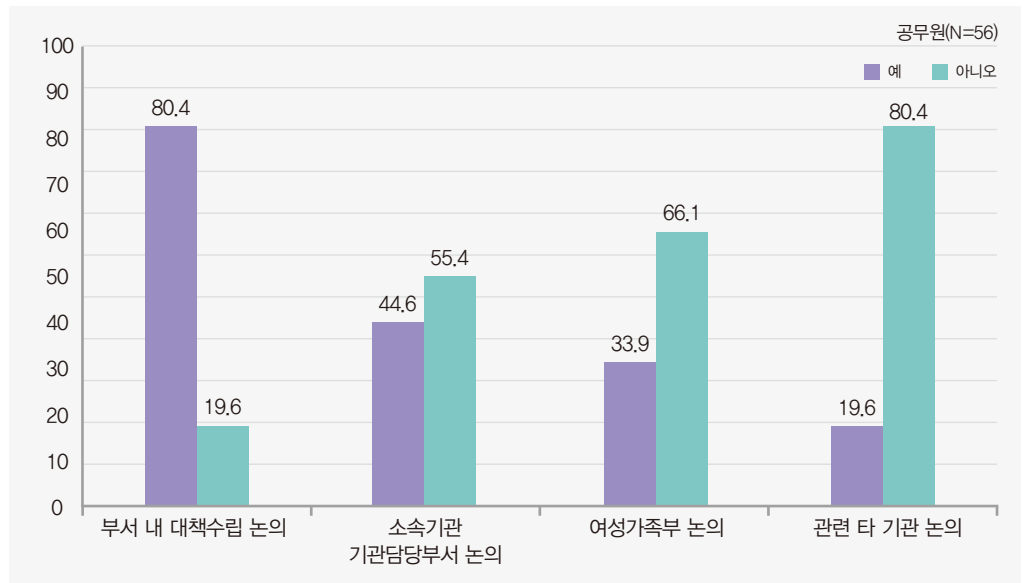
[그림 3] 연구자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추진 애로사항



▶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를 받은 소관기관이 정책개선 대책 수립을 하는 방법

- 공무원에게 여성가족부로부터 특정평가 결과통보를 받은 후 정책개선 대책 수립방법을 조사한 결과 '부서 내에서 부서장, 부서원들과 대책 수립을 논의하였다' 가 80.4%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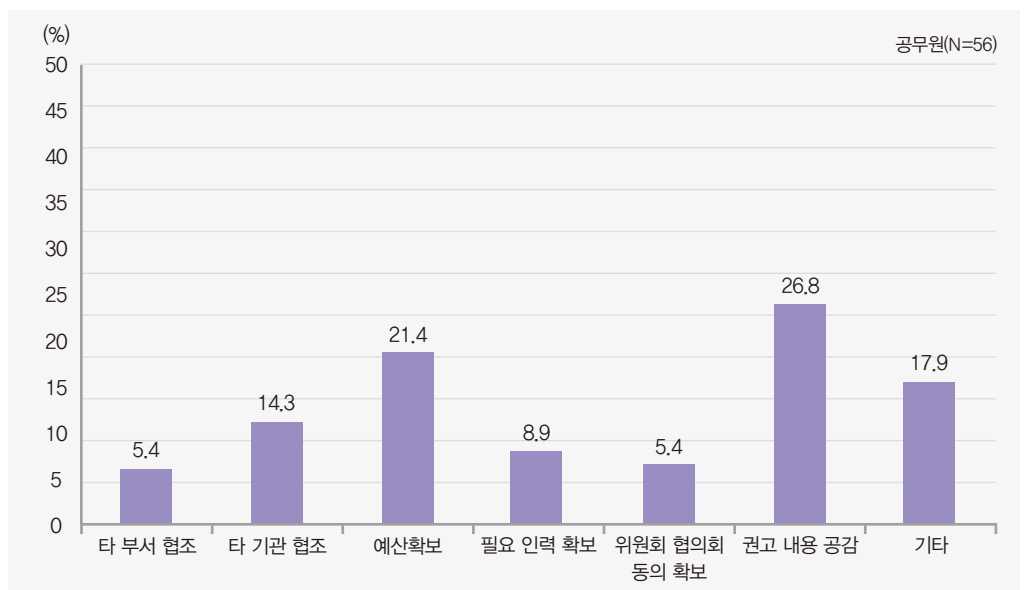
[그림 4] 정책개선 대책 수립 방법



▶ 정책개선 이행 애로사항

-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한 1순위를 보면 '본인 스스로 정책개선 권고(또는 일반개선 과제)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웠다' 26.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책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려웠다' 21.4%, '기타' 17.9%,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데 협조를 받기가 어려웠다' 14.3%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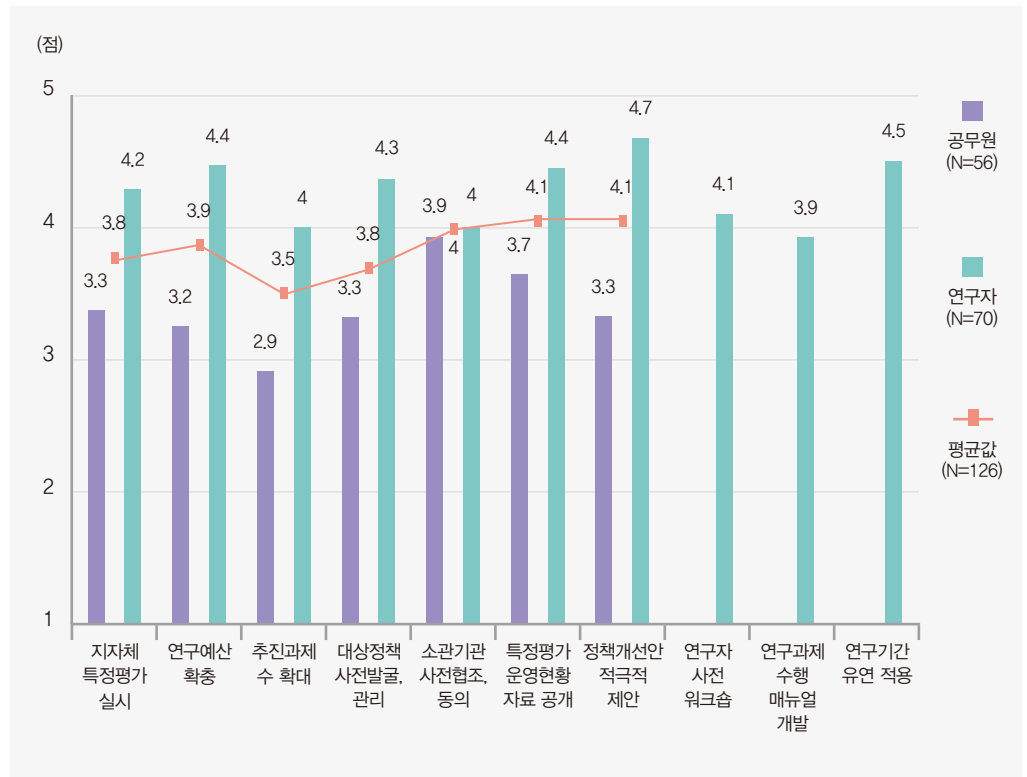
[그림 5] 정책개선 이행 애로사항(1순위)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과제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현황 및 관련 자료의 공개, 정책개선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계 부처에 제안, 대상정책 최종확정 전에 소관기관의 사전협조 또는 동의, 연구예산 확충,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전에 대상정책 발굴 및 확정을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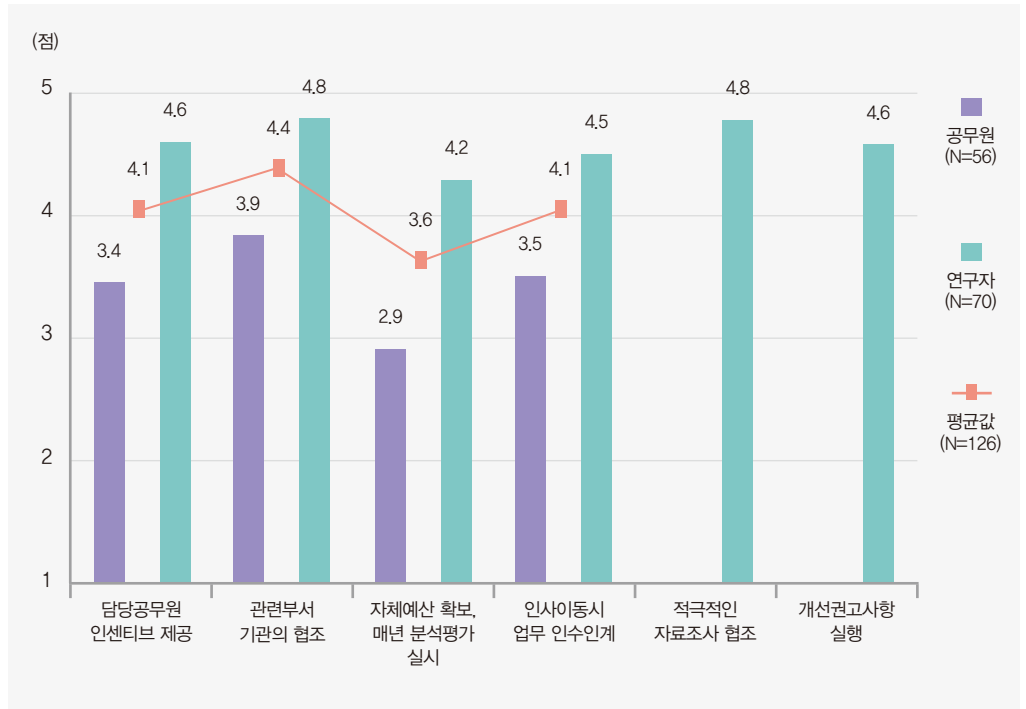
[그림 6]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과제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각 정부기관의 과제

- 정책 개선권고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관련 타 부서 또는 유관기관의 협조 강화. 그리고 향후 각 정부기관이 자체적으로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매년 1개 과제 이상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서 연구자는 매우 높은 요구도를 보였지만 공무원들은 요구도가 낮음.

[그림 7]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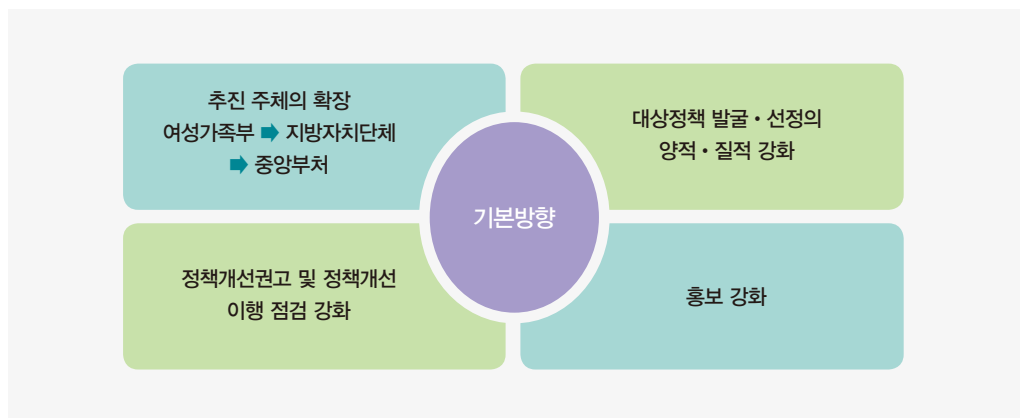
▶ 본 조사를 통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가 공무원 자체평가와 함께 병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기반은 공무원이 분석 평가하기 어려운, 성차별이 예상되면서도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국가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새롭고 설득력 있는 정책개선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을 확인함.

### 3. 정책제언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발전의 기본방향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발전의 기본방향은 추진주체를 현재의 여성가족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까지 확장시키고, 대상정책 발굴·선정의 양적·질적 강화, 정책개선권고 및 이행점검 강화, 정책개선 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것으로 나가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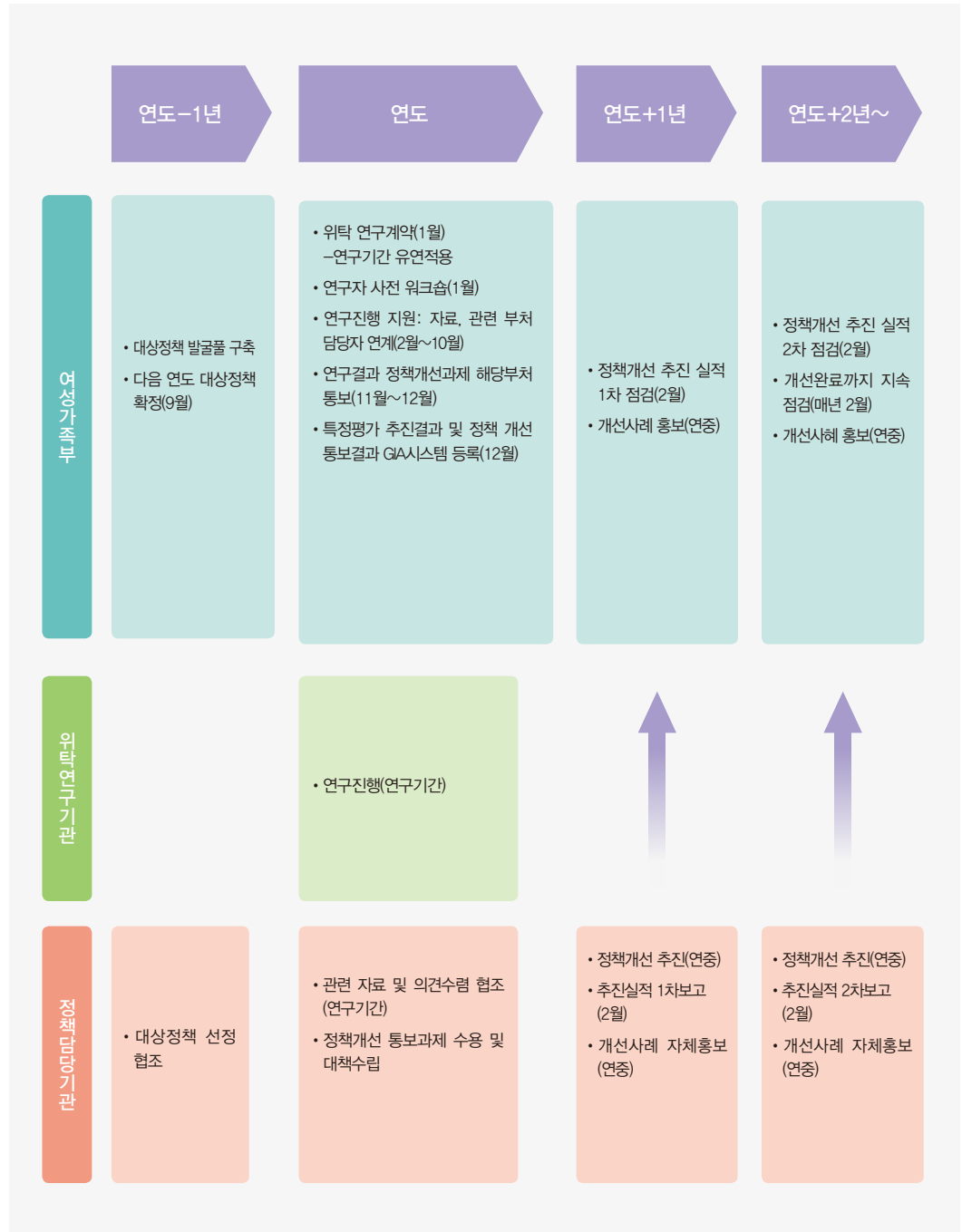
[그림 8]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발전 기본방향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모델 개선(안)

[그림 9]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모델 개선(안)



###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법적 근거 마련

- ▶ 현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주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거 여성가족부 장관이 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추진주체 확장을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추진주체로 제도화 할 필요 있음.

〈표 3〉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주체 법적 근거 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sup>1)</sup>

추진단계	분석 결과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여성가족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생략)	(생략)

1) 이 연구가 완료된 이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제10조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2016.12.20.공포)

###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장기적 추진계획에 따른 대상정책 발굴 및 연구과제 관리 체계 개선

- ▶ 중장기적 대상정책 발굴 및 선정 체계화 : 최소한 2~3년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정책 리스트를 사전에 발굴할 필요 있음, 대상정책 발굴의 정책범위(BRM)도 확대 필요
- ▶ 연구인력 풀 구축
- ▶ 연구과제 관리체계 개선
  - 연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과제 수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과제별 적정 연구예산 지원 필요
  - 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연구기간을 유연하게 운영
  - 연구과제별 연구팀이 구성되고 나면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 필요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과제별로 정책개선권고 현황 및 개선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공개 필요

###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과제 수행 매뉴얼 개발

-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개선과제 도출의 토대가 되는 연구보고서가 신뢰성 있고 우수해야 함. 이를 위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 개발 필요

### 📍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및 교육 실시

-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교육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향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교육이 필요함. 이를 위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 4. 기대효과

- ④ 그 동안 추진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운영현황 파악과 다양한 개선과제 및 발전방안 도출을 통해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
- ④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고유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과정 별 개선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제도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임. 대상과제 발굴 · 선정 개선, 연구수행 개선, 정책개선 이행 강화방안 마련 등을 들 수 있음
- ④ 향후 여성가족부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책과제 도출 · 제공

### 출처

김경희 외(2015). 2015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및 검토.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6a).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여성가족부(2016b).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프리즘 정책연구관리시스템(2016.5.23.).

[http://www.prism.go.kr/homepage/main/retrieve Main.do](http://www.prism.go.kr/homepage/main/retrieve>Main.do)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관계부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부서